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중앙후생관 구내식당 수탁업체 선정 공고

1. 개 요

가. 사업명: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중앙후생관 구내식당 수탁업체 선정

나. 수탁기간: 2027.1.1.~2028.12.31.(2년)

※ '27.1.1.부터 운영개시 하여야 함

다. 위 치: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
타운 중앙후생관 지하 1층 구내식당

라. 현 황

구 분	사 용 면 적			좌 석
	구 분	면 적	계	
구내식당	식 당	1,467.99㎡	2,346.91㎡	600석
	주방1	737.13㎡		
	주방2	141.79㎡		

마. 이용대상: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내 국책기관 직원 약 4,500여 명

※ 타운 내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생활관 구내식당 1개소(300석 규모) 운영 중에 있음

2. 모집 및 평가방법

가. 본 모집은 직접 제출 방식으로만 집행(우편, 택배 접수 등 불가)

나. 사업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 후 협상적격자 선정

3. 제안 신청 자격

가. 다음 사항을 모두 갖춘 업체

- 1) 「식품위생법」 제37조(영업허가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영
업신고를 하여야 하는 업종)에 따라 위탁급식영업 신고를 한 업체

- 2)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에 1년 이상, 단일급식장* 중식 기준 1일
700식 이상 운영실적 1개소 이상 보유 업체

* 사물의 구성이나 내용이 단 하나로 되어 있는 급식장을 의미하며, 동일 기관에서
발주하는 하나의 건물이나 인접 건물의 식당을 동일 업체와 계약하여 급식을
제공하는 경우 단일급식장으로 본다.

-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의 요건을 갖춘 자로서 「같은 영」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 업체

- 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에 따라 공정거
래위원회가 지정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계열회사에 해당하지 아
니한 업체

- 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2호의
기준을 충족하여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동일인 관련자에서 분리
된 친족이 50% 이상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중견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한 업체

- 6) 현장설명회에 참석한 업체

4. 현장설명회 개최

가. 일 시: 2026.10.7.(수) 14:00

※ 본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나. 장 소: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중앙후생관 1층 국제회의실

다. 참가 인원은 업체별 2인 이내로 제한(사전 신청, 신분증 지참 필수)

※ 사전신청방법: 10.6.(화) 17:00까지 업체명, 참석자, 연락처를 기재하여 전자우편
(ehdrjs75@korea.kr)으로 신청 후 전화(043-719-0044) 확인해야 함

5. 사업제안서 접수

가. 일 시: 2026.10.26.(월)~10.30.(금) 평일 9:00~18:00

※ 현장설명회를 참석한 업체에 한하여 제안서 접수 가능

나. 접수장소: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2층 지원총괄팀

다. 제출서류

	제출서류	비고
1	입찰참가 등록서류 표지	[서식1]
2	입찰참가신청서	[서식2]
3	법인등기사항 증명서 1부	접수일로부터 90일 이내 발급받은 서류
4	영업신고필증 1부	
5	사업자등록증 1부	
6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접수일로부터 90일 이내 발급받은 서류
7	인감증명서(사용인감 시 사용인감계 첨부) 1부	접수일로부터 90일 이내 발급받은 서류
7-1	인감도장(또는 사용인감)	
8	사업제안서 1부, 사본 8부, 요약본 8부	
8-1	USB 1개	사업제안서, 요약본, 발표 자료 첨부
9	집단급식 운영사업장 현황 1부	[서식3]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에 1년 이상, 중식 기준 1일 500식 이상 운영실적만 인정
10	집단급식 운영 실적증명서 원본 각 1부	[서식4]
10-1	집단급식 운영 계약서 사본 각 1부	
11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접수일로부터 90일 이내 발급받은 서류
12	서약서 1부	[서식5]
13	청렴입찰이행약정서 1부	[서식6]
14	위임장 1부	[서식7] 대리인 방문·제출 시
15	재직증명서 1부	[서식8] 대리인 방문·제출 시
16	이행(입찰)보증보험증권 또는 입찰보증금 지급각서[서식2]	계약기준금액의 5%이상 보증기간: 입찰마감 전일부터 30일 이상
17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유효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확인서
18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업소 인증서 1부	해당 시
19	식품안전센터(부서) 운영현황서 1부	해당 시

* 구비서류 중 사본 제출 시는 인감으로 원본 대조필 날인 제출

* 평가 당일에는 제안서 접수 마감일까지 제출된 사업제안서, 발표자료(USB) 등만 사용하며 이외의 파일 사용 불허

라. 제안서 내용

- 전문업체로서 운영능력(20점): 재무구조 및 경영상태, 집단급식 운영실적 등
- 구내식당 운영방안(65점): 식단구성의 적정성, 식단가격 구성의 적정성 등
- 서비스 관리 및 차별화 방안(15점): 서비스 관리의 적정성 등

6. 서류심사

가. 제안신청 자격 조건을 갖춘 업체중 참가업체가 7개 초과일 경우 실시

나. 전문업체로서 운영능력을 사전 평가하여 상위 7위 제안자까지 사업 제안 설명회 및 제안서 평가 참가자격 부여(개별 통보)

※ 신청업체 7개 이하일 경우 모두 사업설명회 및 제안서 평가 참가자격 부여

7. 사업제안설명회 및 제안서 평가

가. 일 시: 2026.11.11.(수) 10:00

※ 본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나. 장 소: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중앙후생관 1층 국제회의실

다. 대 상: 현장설명회를 참석하고 제안서를 제출한 업체

라. 순 서: 참가신청 또는 서류심사 결과에 따라 지원센터 추천

마. 발표자를 포함하여 제안 업체별 2명까지 평가장에 입장 가능하며 평가위원 대상으로 업체당 25분 내외 사업설명(발표 15분, 질의응답 10분)

※ 접수된 제안서 이외의 자료를 평가위원회에 제출하는 것은 불가

바. 행정타운 관계자 및 외부 전문가 등 7명 내외로 구성된 제안서 평가 위원회를 개최하여 지원센터가 제시한 평가항목 및 배점표에 따라 평가

8. 협상적격자 선정·공표: 2026.11.13.(금)

9. 수탁업체 선정

가. 제안서에 대한 평점을 합산*한 결과, 합산점수가 가장 높은 제안자를 당해 시설의 협상적격자로 선정

* 하나의 제안자에 대한 평가위원들의 점수 중 최고·최저점수를 제외하고 합산하되, 동일한 최고·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 1개만 제외하고 합산

- 제안서 종합평점이 동점인 경우에는 세부평가항목중 구내식당 운영 방안, 서비스 관리 및 차별화 방안, 전문업체로서의 운영능력 순의 평점이 고득점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나. 제안자가 1인뿐인 경우 제안서에 대한 평점의 평균이 85점* 이상일 때 협상적격자로 선정

* 제안자에 대한 평가위원들의 점수 중 최고·최저점수를 제외하고 산출(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되, 동일한 최고·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 1개만 제외하고 산출

- 다. 협상적격자가 없거나, 기타 사유로 협상적격자 선정이 불가능할 경우 재공고하여 모집
- 라. 협상적격자와 협상이 성사되지 않거나, 제안 내용의 이행을 거부하는 등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경우 차순위 제안자와 협상하여 계약 체결
- 마. 수탁(예정)업체는 관리위탁 통보를 수탁하고 10일 이내에 계약 체결 관련 제반 서류 제출 후, 위·수탁 계약서에 날인함으로써 최종적으로 수탁자로서의 권리를 부여받음
- 바. 수탁업체로 선정이 된 이후 제안요청서에서 정한 무효 사유 또는 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되는 때에는 차순위 제안자와 협상하여 계약 체결

10. 신청의 무효

지원센터는 다음에 해당하는 참가자에 대하여 당해 제안자의 제안서를 무효 처리 함. 여기에서 “신청”이라 함은 제안서를 지원센터에 직접 제출하여 접수하는 행위를 포함함

- 가. 신청자격이 없는 자가 행한 신청
- 나. 지정된 기한 내 접수 장소에 제안서를 직접 제출하지 아니한 신청
- 다. 동일인이 2개 이상의 제안서를 제출한 신청
- 라. 실적증명 등 제출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 * 제출서류를 검증하기 위해 발급기관에 유선·서면 등으로 확인을 요청할 수 있음
- 마. 기타 제안요청서에서 무효 처리할 수 있다고 명시적으로 정한 경우

11. 주요 수탁조건

- 가. 수탁업체는 지원센터에서 제공하는 주방설비 이외의 식당 운영에 필요한 모든 시설 및 집기를 구입·설치하여야 함
- 나. 수탁업체는 위탁재산의 관리에 관하여 지원센터의 지시·감독을 받아야 하며, 위탁 목적을 변경하거나 위탁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및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전대·양도하는 행위를 할 수 없음

- 다. 제안서 및 설명회 발표내용은 위·수탁 계약서에 포함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수탁업체와 협의 후 위·수탁 계약서에 명시할 예정임
- 라. 위탁료(위탁자→수탁자)와 사용료(수탁자→위탁자) 상계 처리
- 마. 구내식당 운영 시 소요되는 관리비용(전기·가스·상하수도·냉난방요금 등)은 위탁자 부담
- 바. 수탁업체는 급식수요의 감소, 변경 등과 같은 외부 요인으로 발생하는 영업환경의 변화와 그에 따른 매출 감소를 사유로 관리위탁 시설에 대한 부분 반납(계약의 일부 해지), 손실보전 등을 요구할 수 없음
- 사. 수탁기간 만료 시 갱신은 수탁업체의 영업이익 재투자실적, 제안내용 이행 여부 및 고객만족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 여부 결정
- 아. 상기 가~사 항의 수탁조건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추후 현장설명회 및 지원센터에서 제시하는 내용에 따름

12. 기타사항

자세한 사항은 제안요청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요청서를 숙지하지 않음에 따른 불이익은 참가 업체에 있습니다. 기타사항은 오송생명과학단지 지원센터 지원총괄팀(☎043-719-0044)으로 문의 바랍니다.

2026. 9. 22.

보건복지부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장(직인생략)